

경인지방병무청 한시임기제9호[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9호(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경인지방병무청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근무지
한시임기제9호	일반행정	1명	'26. 11. 12. ~ '28. 5. 11.	*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근무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2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임용규칙
-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 인사혁신처예규 제186호(통합인사지침)

3 직무 내용

- ☐ 모집전형 및 통지, 입영결과정리
- ☐ 각군 병적편입 및 퇴교자 처리
- ☐ 선발자 연기 및 취소 등 처리

4 응시 요건

□ 공통 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결격사유)】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57조(결격사유)】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합격 후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한시임기제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일반행정·사무관리 등 관련분야 경력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	

□ 우대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시 우대)

연번	구 분	우대 요건
1	경 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관련분야' : 일반행정·사무관리 등 **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관련분야 경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실무경력 기간)
2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 (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2012. 1. 1.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고려사항 】

- 응시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경력의 범위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경력 합산 불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공무원 경력 +민간경력 통산)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 우대하지 않음
- ‘경력’ 은 해당 경력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만을 의미

※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부서, 직책,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 근무경력자는 4대 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후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경력 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기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우 기준과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일자 / 발표일 : 2026. 10. 15.(목) / 2026. 10. 16.(금)
- 임용예정 직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확인서,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응시자 비율	5배수 초과~ 10배수 미만	10배수 이상~ 50배수 미만	50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	5명	6명	7명

○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심사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 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 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자 / 장소 : 2026. 10. 22.(목) / 경인지방병무청 소회의실
- ※ 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요소 : 4개 평정 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합격자 결정방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재면접 시험 실시
- △ (우수자 결정 기준)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순위 부여
- △ (불합격 기준)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2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구 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정	'26. 9. 22.(화) ~10. 2.(금)	'26. 9. 30.(수) ~10. 2.(금)	'26. 10. 16.(금)	'26. 10. 22.(목)	'26. 11. 5.(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2.(금) 18:00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서류 봉투 겉면에 “한시임기제9호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 휴대폰 SMS로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 병무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방문 접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 전자우편 주소 : ioou1001@korea.kr(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건에 한함)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내 용
공 통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응시 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전자우편접수자는 전자수입인지 스캔 파일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 급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 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 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기재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A4 2매 이내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조화를 위한 필수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경력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근무 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해당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제9호)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관련 유의 사항 >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보수 및 근무시간 관련 사항

-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 근무시간 : 「09:00~17:00(주5일,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 근무장소 :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 보 수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로 비례 적용)
 - * 2026년 한시임기제9호 봉급액(주 40시간 기준) : 월 2,346,300원
- ☐ 수 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근무시간에 비례,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
- ☐ 공무원연금 및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가능

9 안내 및 참고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제출서류 반환기간 : 2026. 11. 5. ~ 2027. 2. 4.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 발생,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31-240-7224)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자료】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일반행정	한시임기제9호	1명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주요 업무	○ 일반행정 - 모집병 전형 및 통지, 결말 - 타 병적 편입자 및 퇴교자 처리 - 선발자 연기 및 취소 등 처리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국가관,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언론대응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기획, 전략적 사고, 창의력, 전문성, 정보화능력 등
-------	--

필요 지식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편집 등 정보화 능력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능력과 친절한 민원안내 및 민원요구 수용 능력 등 고객지향적 태도
-------	---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관련분야 경력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	
우대요건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배점 / 최대 4년) ② 정보화 자격증(등급별 차등배점)

【별지 1】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요건
	일반행정	한시임가제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총괄표)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제출유무란 해당란에 “√” 표시, 번호순으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제출
* 스테이플러 미사용

목 록	제출 여부
① [별지1]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별지2] 응시원서(필수)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 제출 ☐ 미제출
③ [별지3]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별지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별지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별지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별지7]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별지8] 경력(재직)증명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제출 ☐ 미제출
⑩ [별지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2026. . .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2】
(앞 면)

응시원서(원본)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본인은 경인지방병무청 한시임기제(9호)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9호(일반행정)	
응시자격		※ 필수 응시자격 3가지 중 해당 요건 기재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한시임기제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우편접수자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스캔파일 첨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수급자 증명서)
-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 가족 증명서)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별지 3】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9호 (일반행정)	성명	
-------	----------	-------	-------------------	----	--

2. 응시자격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과)	16.1.1 ~ 17.11.5. (22개월 5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상세하게 작성	상근/비상근 (주 4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1.5. (22개월 5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상세하게 작성	상근/비상근 (주 40시간 근무)

정보화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작성하지 않음 (담당자 기재)

2. 근무경력(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의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경력(근무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중 채용예정직위의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한하여 기재,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개월 및 일 단위로 기재
예시) 3년 2월 15일(X) → 38개월 15일(O)

(예시)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총 5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
-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2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입

3. 자격증

- 발급 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한 사본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9호 (일반행정)	성 명	
----------	--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동기,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성격,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경력(업적), 생활신조와 가치관, 대인관계, 취미활동, 특기사항, 미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씨크기 휴먼명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6. . .

작성자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9호 (일반행정)	성 명	
----------	--	----------	-------------------	-----	--

◎ 직무수행 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직무수행 방향 및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 : 2매 이내 작성
글씨크기 휴면명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6. . .

작성자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신규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u>한시임기제9호</u> <u>채용 관리</u>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u>한시임기제9호</u> <u>채용 관리</u>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한시임기제9호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1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7】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포함)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근무형태
1. ○○○○ (팀)	2019.X.X ~ 2015.X.XX	XX년XX월XX일	주임		상근 (주40시간)
	2015.X.X ~ 2014.X.XX	XX년XX월XX일	과장		상근 (주35시간)
2. △△△△ (팀)	2014.X.X ~ 2012.X.XX	XX년XX월XX일			
	2012.X.X ~ 2011.X.XX	XX년XX월XX일			
총 경력		○○년○○개월 ○○일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예정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1년2월10일(X) → 14개월 10일(O)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 발생 시에는 즉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제출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별도 기재**
- ⑥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 여부,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시간제 근무(주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예-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관련 직무와 관련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이 경우 심의를 통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경 력 증 명 서

기 관 현 황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형태	☐ 국가 혹은 지자체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의원 등 ☐ 공사 혹은 공단 ☐ 기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년 월 일	근무형태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년한		근무시간	주 ○○시간	
퇴직사유	사유 기재		퇴직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직급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				
		~				
		~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담당자	(인)	
				확인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기관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위 서식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 담당자(확인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 지 원 자

(서명)